

2025년 제4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

2025년 제4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,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사유로 차순위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2일

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장

1. 추가 합격자

채용분야	응시번호	성명	휴대전화 뒷자리
기간제근로자 (사무보조)	사무-5	최*연	3414

2. 최종합격자 서류제출

- 제출기한 : [2025. 12. 26.\(금\) 17:00까지](#)
- 제 출 처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(공무직 등 채용담당)
※ (우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,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고위
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총무팀 / ☎ 02-6320-0340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제출서류 (모든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나오도록 발급)
 -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서식1 참조]
 - ②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[서식2 참조]

- ③ 채용 신체검사서 1부 [서식3 참조]
- ④ 이력서 1부 [서식4 참조] *서면 및 e-mail 제출 thfdl90@korea.kr
- ⑤ 최종학력(졸업)증명서 1부
- ⑥ 기본증명서(상세)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
- ⑦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(앞·뒷면) 사본 1부
- ⑧ 사진(반명합판) jpg 파일 *e-mail 제출 thfdl90@korea.kr

3. 기타사항

- 제출기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결격사유 확인, 제출서류 허위·부정 기재 사실 확인,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포기서[서식5]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(☎02-6320-03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서식1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이용기관 명칭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-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
-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유무 정보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년 월 일

동의자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(서식2)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(기간제)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,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5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

(서식3)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시험실시기관	③응시직명	④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 부 X선 검 사	
기 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	[]합 격	합격 사유
합격 여부	[]판 정 보 류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'공무직' 또는 '기간제'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결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(서식4)

이 력 서

인 적 사 항	사 진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	휴대전화		E - Mail	
		주 소			

학 력	기 간	출신학교	전공

자 격 면 허	자격증	취득일자	발급기관

경 력 사 항	기 간	기관명	담당업무

(서식5)

채용 포기서

구 분	2025년 제1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간제근로자 채용		
응 시 번 호			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(우편번호 :)		
휴 대 전 화		e-mail	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공무직(또는 기간제)근로자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

※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: 학업, 취업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